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98
----------	-------

발의연월일 : 2026. 4. 22.

발 의 자 : 박민규 · 윤준병 · 이수진
서삼석 · 김한규 · 맹성규
염태영 · 김우영 · 이춘석
김남근 · 조승래 · 김상욱
손 솔 · 임미애 · 김남희
박정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입·출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건축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주차장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차장 관련 법령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규제가 지능형 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능형 주차장치는 기존 수직 순환식 타워와 같은 거대 고정 시설물 등을 전제로 하지 않음에도 상주

운영방식, 공공주택 내 도입 불가 등 지능형 주차장치의 특성과는 무관한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신기술 도입 및 상용화가 지연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능형 주차장치 및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능형 주차장 특성에 부합하는 주차장 구조·설비, 관리·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연구개발, 사업화,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 시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도시 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3 신설 등).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설비”를 “설비(제2호의2에 따른 지능형주차장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능형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의3. ”지능형주차장“이란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능형주차장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5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지능형주차장

제19조의25를 제19조의29로 하고, 제5장의3에 제19조의25부터 제19조의2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5(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6(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① 지능형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지능형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으로 지능형주차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에 관하여는 제19조의20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지능형주차장치”로, “기계식주차장”은 “지능형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각각 본다.

제19조의27(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한 준용)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도인 증, 지능형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지능형주차장치 보수업,

지능형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사고 보고 및 사고조사, 지능형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지능형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2까지,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제19조의21부터 제19조의2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은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지능형주차장치”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각각 본다.

제19조의28(지능형주차장 지원 시책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주차장의 보급을 통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주차장치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지능형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사업
3. 그 밖에 지능형주차장의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의2제1항 중 “기계식주차장의”를 “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의”로,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지능형주차장관리자 등에게”로 한다.

제2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25에 따른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4조의3제1호 중 “제19조의8제1항”을 “제19조의8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9조의19”를 “제19조의19(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9조의12”를 “제19조의12(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 중 “제19조의14제1항”을 “제19조의14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제19조의12제1항”을 “제19조의12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9조의12제2항”을 “제19조의12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의23제4항”을 “제19조의23제4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의23제2항”을 “제19조의23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기계식주차장을”을 “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의24제1항”을 “제19조의24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9조의6제1항”을 “제19조의6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의6제1항”을 “제19조의6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기계식주차장치를”을 “기계식주차장치 및 지능형주차장치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를 “제19조의6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및 지능형주차장치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을 “제19조의9제2항 각 호(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의23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9조의9제2항 각 호”를 “제19조의9제2항 각 호(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기계식주차장을”을 “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9조의10제3항”을 “제19조의10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기계식주차장을”을 “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를 “제19조의12(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의23제4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 중 “제19조의14제1항”을 각각 “제19조의14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3 중 “제19조의23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기계식주차장을”을

“기계식주차장 또는 지능형주차장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4. 제19조의26제1항을 위한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9조의16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2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의22제2항”을 “제19조의22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9조의9제3항”을 “제19조의9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9조의14제3항”을 “제19조의14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의17”을 “제19조의17(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의20제2항”을 “제19조의20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9조의20제4항”을 “제19조의20제4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19조의20제7항”을 “제19조의20제7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및 제4호의5 중 “제19조의20제8항”을 각각 “제19조의

20제8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6 중 “제19조의20제9항”을 “제19조의20제9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9조의23제1항 후단”을 “제19조의23제1항 후단(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19조의24제3항”을 “제19조의24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 및 제19조의27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기계식주차장의”를 “기계식주차장 또는 지능형주차장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의20제3항”을 “제19조의20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의20제5항”을 “제19조의20제5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 13. (생략)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다.

4. ~ 13.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능형주차장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의3 지능형주차장

제19조의25(지능형주차장의 설치 기준)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6(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① 지능형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지능형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

<신 설>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으로 지능형주차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에 관하여는 제19조의20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지능형주차장치”로, “기계식주차장”은 “지능형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각각 본다.

제19조의27(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한 준용)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지능형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지능형주차장치 보수업, 지능형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사고 보고 및 사고조사, 지능형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지능형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신 설>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2까지,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제19조의21부터 제19조의2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지능형주차장치”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각각 본다.

제19조의28(지능형주차장 지원 시책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주차장의 보급을 통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주차장치에 관한 연구

제19조의25(부기등기) (생략)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노외주차장관리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

개발 사업

2. 지능형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사업

3. 그 밖에 지능형주차장의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의29(부기등기) (현행 제19조의25와 같음)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 -----

-----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관리자·지능형주차장관리자-----
등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영업정지 등) -----

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 5. (생략)

제24조의3(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9조의25에 따른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청문) -----

1. 제19조의8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9조의19(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

본다.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
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
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
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
원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
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
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1. 제19조의12제1항(제19조의2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2. 제19조의12제2항(제19조의2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3. 제19조의23제4항(제19조의2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제29조(벌칙)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23제2항(제19조의2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기계식주차
장 및 지능형주차장을-----

4. 제19조의24제1항(제19조의2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합한다)-----

② -----

1. 2. (현행과 같음)

3. -----
-----제19조의6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9조의6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계식주차장치 및 지능형주차장치를-----

5. 제19조의6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및 지능형주차장치의-----

6. -----

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
를 받은 자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
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
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
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
를 한 자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
조의23제1항(제19조의27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제19
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을-----

8. 제19조의10제3항(제19조의2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기계식주차장 및 지
능형주차장을-----

9. 제19조의12(제19조의27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9조의23제4항(제
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계
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의-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의2. (생략)

11의3.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신설>

12.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9조의14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제19조의14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제19조의23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계식주차장 또는 지능형주차장

11의4. 제19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2.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1. (생략)

1의2.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9조의16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9조의22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9조의22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9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2의2. 제19조의14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17(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의2.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의20제4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의3.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

4의4.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의6.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영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

4의3. 제19조의20제7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의4. 제19조의20제8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의5. 제19조의20제8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의6. 제19조의20제9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6.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9조의24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 및 제19조의27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기계식주차장 또는 지능형주차장의-----

3. 제19조의20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4. <u>제19조의20제5항</u>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p> <p>④ (생략)</p>	<p>4. <u>제19조의20제5항(제19조의2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u>----- -----</p> <p>④ (현행과 같음)</p>
---------------------------------------------------------------------	---------------------------------------------------------------------------------------------------